

제 14 장 정부조달

제 14.1 조 목적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간 무역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을 확인한다.

제 14.2 조 기존의 권리와 의무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상의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장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상의 양 당사국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4.3 조 적용범위

1. 제5조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외하고 이 장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이하 “개정 정부조달협정” 이라 한다)의 부속서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를 참조 방식에 의하여 통합한다. 이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부속서 14-가부터 14-사까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조달에 적용한다.
2. 개정 정부조달협정과 의 일관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에 통합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추가 개정이 있는 경우, 제23.2 조(개정)에 언급된 개정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된다.

제 14.4 조 수정 및 정정

1. 한쪽 당사국은 부속서 14-가의 정정, 부속서 14-가로부터의 기관의 철회 또는 부속서 14-가의 그 밖의 수정(이하 “수정” 이라 한다)의 제안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수정을 제안하는 당사국(이하 “수정 당사국” 이라 한다)은 통보에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권리의 행사로서 부속서 14-가로부터 그 기관

의 철회를 제안하는 경우, 정부의 그러한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증거, 또는

- 나. 그 밖의 수정제안의 경우, 변경이 이 장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미치는 예상결과에 관한 정보
2.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제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정제안의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당사국에게 자국의 이의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의사항의 이유를 포함시킨다.
 3.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모든 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의에 있어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 이전에 이 장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과 상호 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정제안을, 그리고 제1항나호에 따른 통보의 경우, 보상조정 청구를 검토한다.
 4. 한쪽 당사국이 제1항나호에 따른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수정 당사국은 보상조정이 그 수정 이전에 존재하였던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의한다. 그러한 수정은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사항을 수정 당사국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제안이 당사국이 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정제안을 채택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 당사국에게 이의사항을 철회하는 서면통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 14.5 조 추가 교섭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된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접근을 비 당사국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장 접근 확대를 부여하기 위한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제 14.6 조
정부조달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위원회의 진행중인 작업을 인정하며 상호 관심 사안을 추구하는 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양자적 성격의 문제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의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 촉진

나. 관련 정보의 교환

다. 시장 접근 확대 추구, 또는

라.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3. 제 2 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정부조달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부 당국을 문의처로서 지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외교통상개발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

제 14.7 조
발효

이 장은 양 당사국을 위한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발효일 또는 제 23.4 조(발효)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에 발효한다.

부속서 14
부속서 14-가

한국 양허표-중앙정부기관

기준가:	상품	원화 100,000,000 원
	서비스	원화 100,000,000 원
	건설서비스	5,000,000 SDR

기관 목록:

1.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3. 문화재청
4. 방위사업청
5. 공정거래위원회
6. 금융위원회
7. 해양경찰청 (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에 규정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구매는 제외한다)
8. 방송통신위원회
9. 관세청
10. 산림청
11. 특허청
12. 기상청
13. 병무청
14. 농림축산식품부
15. 문화체육관광부
16. 교육부
17. 고용노동부
18. 환경부
19. 식품의약품안전처
20. 외교부
21. 여성가족부
22. 법제처

23. 보건복지부
24. 법무부
25. 국토교통부
26. 국방부
27. 해양수산부
28. 국가보훈처
29. 미래창조과학부
30. 안전행정부
31. 기획재정부
32. 산업통상자원부
33. 통일부
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5. 소방방재청
36. 국가인권위원회
37. 경찰청 (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에 규정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구매는 제외한다)
38. 국세청
39. 국무조정실
40. 국무총리비서실
41. 조달청(주해 3)
42. 농촌진흥청
43. 중소기업청
44. 통계청
45. 대검찰청

부속서 14-가에 대한 한국의 주해

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이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달청: 이 장은 조달청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또는 이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캐나다 양허표 - 연방정부기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아래 기준가에 따라 이 부속서에 나열된 기관에 의한 조달에 적용된다.

기준가:	상품	100,000 캐나다 달러
	서비스	100,000 캐나다 달러
	건설서비스	5,000,000 SDR

기관 목록:

1. 대서양 캐나다 기회청 (자체계정)
2.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3.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
4.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
5. 캐나다 국세청
6. 캐나다 공무원 교육원
7. 캐나다 직업 보건 안전 센터
8. 캐나다 식품검사청
9. 캐나다 인권위원회
10. 캐나다 보건연구소
11. 캐나다 정부간회의 사무국
12.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13. 캐나다 핵안전 위원회

14.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 위원회 (자체계정)
15. 캐나다 교통사고 조사 안전위원회
16. 캐나다 교통청 (자체계정)
17. 저작권 위원회
18. 캐나다 교정청
19. 법원행정국
20. 농업 및 농산 식품부
21. 캐나다 문화재부
22. 시민권 및 이민부
23. 고용 사회개발부
24. 재무부
25. 해양수산부
26. 외교통상개발부
27. 보건부
28. 캐나다 원주민 및 북부지역 발전부
29. 산업부
30. 법무부
31. 국방부
32. 천연자원부
33. 공공안전방재부
34. 공공근로 및 정부서비스부(자체계정)
35. 환경부
36. 교통부
37. 보훈부
38. 서부경제다양성부(자체계정)

39. 군인정착관리관
40. 전역자토지법관리관
41. 캐나다 퀘백주 경제발전처
42. 이민 및 난민위원회
43. 캐나다 도서 및 국가기록물관
44. 국립 전장위원회
45. 국립 에너지 위원회 (자체계정)
46. 국립 농작물 위원회
47. 국립 가석방 위원회
48.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
49. 캐나다 과학 기술 연구 위원회
50. 북부 송유관청 (자체계정)
51. 감사원
52. 선거관리관실
53. 연방법무관무관실
54. 공식언어판무관실
55. 여성지위조정관실
56. 총독비서실
57. 캐나다 사생활 보호관실
58. 금융기관감독관실
59. 캐나다 공원국
60. 특허 약가 검토위원회
61. 추밀원 사무처

62. 캐나다 공공보건청
63. 공공서비스위원회
64. 공공서비스노동관계위원회
65. 캐나다 대법원 호적처
66. 경쟁재판등기처
67.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
68.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외부검토위원회
69.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공공고충처리위원회
70. 사회인문과학 연구위원회
71. 캐나다 통계청
72. 캐나다 교통항소법원
73. 재무위원회 비서실

부속서 14-가에 대한 캐나다 의 주해

부속서 14-가에 나열된 어떠한 기관도 하부기관을 창설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부속서 14-나
상품

한국 양허표

1.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부속서 14-가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 1 항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달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의 군급번호 범주에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설명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2610	항공기용을 제외한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3416	선반
3417	절삭기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4110	냉장장비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온수기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5530	합판 및 단판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문 및 구성품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6505	약품 및 생물체재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6840	살충소독제
6850	각종 특수화학물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7350	식탁용 식기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8110	드럼 및 깡통

9150 기름 및 윤활유 :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9310 종이와 판지

캐나다 양허표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 2 항을 조건으로, 이 장은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개정 정부조달협정 제 3 조 1 항의 적용에 따라, 국방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캐나다 해안경비대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달과 관련하여 이 장은 아래 기재된 연방공급분류(FSC)표에 기술된 상품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i>FSC</i>	<i>설명</i>
22	철로장비
23	자동차, 트레일러 그리고 자전거 (2310 의 버스, 2320 및 2330 의 군용 트럭 및 트레일러, 2350 의 궤도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 기존에 2320 으로 분류되었던 2355 의 바퀴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은 제외한다)
24	트랙터
25	차량 관련 장비 구성요소
26	타이어와 튜브
29	엔진 부품품
30	기계 동력 전송 장비
32	목재작업 기계 및 장비
34	금속 작업 기계
35	서비스 및 무역 장비
36	특수 산업 기계
37	농업 기계 및 장비
38	건설, 광산, 채굴 및 고속도로 유지 장비
39	물자 취급 장비
40	줄, 케이블, 체인 그리고 이음쇠
41	냉장 및 공기조절 장비

- 42 소방, 구조 및 안전 장비(4220: 해양 구조 및 다이빙 장비 그리고
4230: 오염제거 및 주입 장비는 제외한다)
- 43 펌프 및 압축기
- 44 용광로, 화력발전소, 건조 설비 및 원자로
- 45 배관, 가열 및 위생 설비
- 46 정수 및 하수 처리 장비
- 47 파이프, 튜브, 호스 그리고 이음쇠
- 48 밸브
- 49 유지 및 수리점용 장비
- 52 측정공구
- 53 하드웨어 및 연마재
- 54 조립식 구조물 및 비계
- 55 목재, 목공 제품, 합판 및 단판
- 56 건설 및 건축 자재
- 61 전선, 전력 및 배전 장비
- 62 조명기구 및 램프
- 63 경보 및 신호 시스템
- 65 의료, 치과 및 수의 장비 및 보급품
- 66 기구 및 실험용 장비(6615: 자동 항법 체계 및 항공 자이로 구성품 및
6665: 위험 감지 기구 및 장치는 제외한다)
- 67 사진 장비
- 68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 69 훈련 보조물 및 장치
- 70 일반적 목적의 데이터 자동 처리 장비, 소프트웨어, 보급품 및 지원 장
비(7010: 자동데이터처리장비(ADPE) 환경설정은 제외한다)
- 71 가구
- 72 가정 및 상업용 비품 및 기기
- 73 음식 조리 및 급식 장비
- 74 사무용 기계, 문서 편집 시스템 및 녹화 장비
- 75 사무용 보급품 및 장비
- 76 책, 지도 및 기타 출판물(7650: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제외한다)
- 77 악기, 축음기 및 가정용 라디오
- 78 레크레이션 및 운동 장비
- 79 청소 장비 및 보급품
- 80 솔, 페인트, 밀봉제 및 접착제

81	용기, 포장 및 포장 보급품
85	세면도구
87	농업용 보급품
88	산 동물
91	연료, 윤활유, 기름 및 왁스
93	비금속 제조물
94	비금속 원료
96	광석, 광물 및 이들의 1 차 제품
99	기타

부속서 14-다
서비스

한국 양허표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다음의 서비스는 적용대상이다.

<i>GNS/W/120</i>	<i>CPC</i>	<i>설명</i>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설계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건축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1.B.e.	845	사무 기계 및 장비(컴퓨터 포함)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i>GNS/W/120</i>	<i>CPC</i>	<i>설명</i>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15 인승 미만의 승용차에 한한다)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83107	건설 기계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1.F.e.	86761*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에 한한다)
	86764	기술적 진단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8814*	임업 부수 서비스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방제 서비스를 제외한다)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장비의 유지 및 보수

	8862, 8863	
	8864, 8865	
	8866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 (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하는 고도 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서비스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한다)
2.D.e.	-	음반 제작 및 유통 서비스 (음성 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에 한한다)

<i>GNS/W/120</i>	<i>CPC</i>	<i>설명</i>
6.B.	9402*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에 한한다)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에 한한다)
9.A	641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 제공 서비스
9.A	6431	오락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9.B	7471	여행 대행 및 여행 운영 서비스(정부 운송요청은 제외한다)
11.A.b.	7212*	국제운송(연안운송 제외)
11.A.d.	8868*	선박의 유지 및 보수
11.F.b.	71233*	컨테이너 화물운송(연안운송 제외)
11.H.c	748*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리업서비스 -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 해운중개서비스 - 항공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통관서비스
11.I.		철도화물운송주선

부속서 14-다에 대한 한국의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기재된대로 “일부분”을 가리킨다.

캐나다 양허표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 2 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CPC)에 따른다. 연방 기관에 대한 이 장의 이행 목적상, 캐나다는 “공통 분류 체계”를 사용할 것이다.
2. 이 장은 다음의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CPC	내용
633	개인 및 가정 물품 수리 서비스
641	호텔 및 유사 숙박 서비스
642-643	식음료 제공 서비스
821	자가 혹은 임차 재산 관련 부동산 서비스
8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서비스
841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842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자문 서비스, 시스템 분석, 디자인, 프로그래밍 및 유지 서비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843	처리, 표 작성 및 설비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 서비스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844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849	그 밖의 컴퓨터 서비스
861	법률 서비스(외국법 및 국제법에 한한 자문 서비스)
862	회계, 감사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 863 세무 서비스(법률 서비스는 제외한다)
- 874 건물 청소 서비스
- 876 포장 서비스
- 883 시추 및 현장 서비스를 포함한 광업 부수 서비스
- 940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유사한 서비스
- 7471 여행 대행업 및 여행 운영 서비스
- 7512 상업적 큐리어 서비스(복합 모드를 포함한다)
-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 7523 전자메일
-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코드와 프로토콜 변환 검색을 포함하는 고도/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 7523 음성 메일
- 8660 경영 자문 관련 서비스(86602 의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제외한다)
- 8671 건축설계서비스
-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86731 의 교통 인프라 터키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제외한다)
- 8674 도시 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 8676 품질관리 및 점검을 포함한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FSC 58 관련 및 교통 설비는 제외한다)
- 8814 산림관리를 포함한 산림 및 벌목 부수 서비스

- 8861 부터
- 8864 까지
- 및 8866 금속 생산품, 기계 및 설비에 부수된 보수 서비스

- 83106 부터
- 83109
- 까지에 한함 기계 및 설비와 관련한 운영자 미포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 83203 부터
- 83209
- 까지에 한함 개인 및 가정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 86501 일반적 경영 자문 서비스
- 86503 마케팅 관리 자문 서비스
- 86504 인적 자원 관리 자문 서비스
- 86505 생산 관리 자문 서비스

부속서 14-다에 대한 캐나다의 주해

1. 이 장은 GATS 의 캐나다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2. 캐나다의 통신 서비스 적용범위는 공중 통신 전송 네트워크의 공급자로부터 임대 한 기초 통신 설비의 공급을 위한 고도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에 한정된다.
3.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정부시설 또는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하여 정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민간이 소유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서비스
 - 나. 공익사업
 - 다. 비행장, 통신 및 미사일 설비에 관련된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라. 선박 건조 및 수리 그리고 관련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마. 국방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및 캐나다 해안경비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구매한 것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상품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 그리고
- 바. 해외주둔 군병력 지원관련 서비스 조달

부속서 14-라 건설 서비스

한국 양허표

정의:

1. 건설 서비스 계약이란 중앙품목분류 제 51 부에서 뜻하는 토목 또는 건축 공사의 모든 수단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한 계약은 건설·운영·이전(이하 “BOT” 라 한다) 기준금액이 적용되는 BOT 계약을 포함한다.
2. BOT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 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명시된 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이다.

기준가: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기관에는 5,000,000 SDR

BOT 기준가: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기관에는 5,000,000 SDR

건설서비스의 목록:

CPC 설명

51 건설업

부속서 14-라에 대한 한국의 주해

이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캐나다 양허표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제 2 항에 따라, 이 장은 국제연합 잠정 중앙 상품분류(CPC) 제 51 부의 모든 건설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준설 서비스, 그리고

나. 연방 교통부에 의한, 또는 대신하여 조달되는 건설 서비스

부속서 14-마 일반 주해

한국 양허표

1. 부속서 14-다에 기재된 서비스는 다른쪽 당사국에 대하여서는 다른쪽 당사국이 그 서비스를 부속서 14-다에 포함시킨 한도에서만 적용대상이 된다.
2.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이 장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캐나다 양허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일반 주해는 부속서 14-가부터 14-라까지를 포함하여 이 장에 적용된다.

1.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선박건조 및 수리
 - 나. 도시철도 및 도시 교통 설비, 체계, 구성요소 및 그에 포함된 자재뿐만 아니라 철 또는 강철 자재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 다. FSC 58(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장비)
 - 라. 농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농산물, 그리고
 - 마. 조달 계약의 부분을 이루는 또는 부수적인 교통 서비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소기업 및 소수자 소유 기업을 위한 할당분
 - 나. 원주민에 대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조치. 이 장은 1982년 「헌법」의 제 35절에 따른 캐나다 원주민의 기존 원주민의 권리 또는 조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국제 협정에 따른 그리고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 또는 개발을 위하여 의도된 계약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다음에 따라 해석된다.

가. 캐나다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조달은 정부의 직접적 혜택 또는 사용을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획득을 위한 계약적 거래로 정의된다. 조달 과정은 조달기관이 조달 요건에 대하여 결정한 이후에 시작하여 낙찰까지 포함하여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는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과 다른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 간 조달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에 의하여 낙찰될 계약이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은 그 계약을 구성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부속서 14-가의 연방 기관에 명시적이거나 일반적으로 관련된 예외는 승계 기관이나 기관군 또는 기업이나 기업군에게 이 제안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또한 적용될 것이다.

부속서 14-마
공고의 공표

한국의 경우, www.g2b.go.kr 상의 한국 온라인 E-정부조달 시스템(KONEPS) 또는 필요시, gwanbo.korea.go.kr 상의 전자 관보

캐나다의 경우, <https://buyandsell.gc.ca/>상의 정부 전자 입찰 서비스(GETS)

부속서 14-사 기준가 조정

1. 부속서 14-가에 언급되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는 필요시에 양 당사국간 협의에 기초하여 조정된다.
2. 부속서 14-가에 언급되어 있는 건설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결정에 관한 위원회 GPA/1, 부속서 3 에 있는 공식에 따라 조정된다.
3. 양 당사국은 건설 서비스를 위한 기준가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발효 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최초 조정일부 터 시작하여 매 2 년마다 조정된다는 것에 합의한다.